

## Q & A 주요 내용

### <질의 1>

제46조의 2를 보면 단서조항에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중 공통사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기초 자료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된 자료(수질측정 자료 등)는 반드시 기한내 입력하셔야 합니다.

### <질의 2>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전항목인지?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조사 대상으로 허가증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

### <질의 3>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측정 대상은 허가증에 기재된 항목입니다. 다만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9개 물질 중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측정항목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사례(2019.4월)

### [질문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을 위하여 2018년도에 분기 1회씩 원폐수 및 방류수를 샘플링하여 전항목 분석 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기재된 조사항목은 인허가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며, 권고사항으로 전항목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에 대하여는 차후 측정부터는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허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8년도 분기별 분석시 불검출 항목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는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물환경보전법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환경부)’에 따른 배출량 조사 항목은 배출시설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 다만, 동 조사계획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물질 중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한 분석(‘18~’19) 결과를 제출하고, 차후 측정부터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검토하여 불검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 배출시설 허가증 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이 실제 배출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증 외 항목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나,
-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최초 2년의 기간 동안 전항목 측정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현지조사를 포함한 검토와 검증 과정에서 추가 배출 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할 예정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4>

측정은 방류수만 하면 되는건지?

☞ 측정 대상은 원폐수와 방류수입니다. 개별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발생량)와 개별방지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배출량)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 💧 처리형태별 측정지점 선정원칙(적용범위)

구분	처리형태	측정지점	구분	처리형태	측정지점
1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처리시설 전·후	4	원폐수(또는 개별처리 후)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이후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와 무관) 	공동방지시설 전·후
2	개별처리 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처리시설 전·후	5	위탁처리 	위탁처리수 저장소
3	원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사업장 최종 배출구	6	기타(1~5에 속하지 않으나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최종 배출구

### <질의 5>

한 사업장에 배출시설이 여러개 있는 경우 집수조로 유입된 폐수를 측정하여도 되나요?

☞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출시설별로 각각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 상 동일한 시설의 폐수가 집수조에서 혼합될 경우에는 해당 집수조 폐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합니다.

### <질의 6>

수질 측정은 측정대행기관에 반드시 의뢰하여야 하는지?

☞ 자가측정, 측정대행기관을 통한 측정, 지도점검기관(지자체, 환경청)에서 측정한 자료 모두 가능합니다. 단, 측정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 7>

조업중지, 휴업기간 중에도 배출량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허가중인 사업장은 반드시 배출량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업중지, 휴업기간에는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측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단 휴업 또는 조업중지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질의 8>

한 사업장에 직접 방류,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위탁처리, 공공방지시설에서 처리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 측정횟수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는지?

☞ 처리방법별로 정해진 횟수에 맞춰서 각각 측정하면 됩니다.

### <질의 9>

폐수를 위탁하는 경우 2~3년에 한번 처리하더라도 반기 1회 측정하여야 하는지?

☞ 실제 처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기 1회 측정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내 위탁처리한 사례가 없는 경우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 10>

폐수량이 줄어들어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규모에 맞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18년 5월에 3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18년 상반기만 측정, 하반기부터는 측정 제외,

#### <질의 11>

측정자료가 적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배출량조사대상 항목인지?

☞ 배출량조사대상은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원폐수(자가처리시는 방류수까지 포함)를 측정하였을 때 적용기준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 허가증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 <질의 12>

최종방류구가 4대강 수계가 아닌 해양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 공공수역에 해양도 포함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대상임

#### <질의 13>

배출시설별로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원폐수에 대한 유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재방법은?

☞ 집수조 또는 방류구의 유량계를 기준으로 배출시설 허가증에 표시된 폐수발생량 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질의 14>

2018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제출 시 2017년 조사자료 대신 제출된 2018년도 자료를 2019년 조사 시에도 활용 가능한지?

☞ 2019년 배출량 조사 시 2018년 측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도에 2018년도 농도 + 2017년도 유량을 활용하였다면, 2019

년도 조사 시에는 2018년도 농도 + 2018년도 유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